〈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9063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9. 7. 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1.29

http://www.i-mirae.kr/

아이미래로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미래앤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미래앤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 로 165, 704 호(가산동,백상스타타워)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02-891-599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02-893-599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891-5992

기 6 시 급 급 6 구 시 옷 단회 단호] · 02 001 500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아이미래로』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u>내용의 타당성을 검토</u>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u>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u>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 또는 시·도</u>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 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l.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아이미래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3	가산디지털 2 로 165	5, 704 호(가산동,박	백상스타워 2 차)			
בב ווח ווכ וח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미래앤꿈 	개인사업자	2017년 08월 01일	이정	02-891-5992	02-893-5992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717-03-	-006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이정	아이미래로		금천구 가산디지			
		31313131	704 호	(가산동,백상스타타	워 2 차)		
대표	사업(경	l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년 08	3월 ~ 현재	이정	02-891-5992	02-893-5992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저희과 이이미게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 로 165,				
이사	정해광	아이미래로	704 호(가산동,백상스타티		대표팩스번호 이2-893-5992 이2-893-5992 주 소 기산디지털 2로 165, 등,백상스타타당 2차)		
	사업(경	l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년 08	3월 ~ 현재	이정	02-891-5992	02-893-5992		

3. 가맹희망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하게 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 가 설 명
명 칭	아이미래로	1
상 호	아이미래로 ()점	/

서비스표	아이미래로	출원중
그 밖의 영업표지	방문산후조리/베이비시터 이나이미래로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인수·합병 내역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3,793	2,594	1,199	199,333	23,765	24,989	
2022	4,373	3,163	1,210	202,810	23,762	25,288	
2021	2021 410,922		44,922	218,505	16,993	20,77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은 경영하고 있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각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가맹사업	성 명 현 직 위 -		사 업 경 력				
관련여부 영향		237	사업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이정	대표	2017.08.01.~ 현재	대표	회사업무 총괄		
관련	정해광	사내이사	2017.08.01.~ 현재	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시정		임원수	직원수
시점	상근	비상근	그런구
2023.12.31	2	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아이미래로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아이미래로]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및 -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만료일 (사용허용기간)
아이미래로	영업표지로	2019.04.18	4020190060574	저희고	2030.03.20.
	사용	2020.03.20	4015883490000	정해광	(만료일까지)

- ⇒ 당사의 지적재산권이 출원 및 출원준비 중인 기간 동안에는 관련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

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이외의 범위에서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는 한국 특허 정보원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당사의 [아이미래로]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당사의 [아이미래로]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8년 08월 14일 입니다.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 없음)

2. [아이미래로]가맹사업 연혁

당사는 가맹사업 시작일 이후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의 변경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미래앤꿈	아이미래로	이정	2018.08.~ 202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탈로 165, 4층(가산동, 가산비지니스센터)
미래앤꿈	아이미래로	이정	2021.11.~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 로 165, 704 호(가산동,백상스타타워 2 차)

3. [아이미래로]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ما ما ما عال ڪ	대분류	소분류				
아이미래로	기타 서비스	산후 도우미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TICH	2023년도 말		2023년도 말 2022년도 말		2021년도 말			шП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비고
전체	19	18	1	20	18	2	23	22	1	
서울	10	9	1	11	9	2	10	9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1	1	0	1	1	0	1	1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6	6	0	6	6	0	9	9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1	1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아이미래로]의 가맹점수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203	18	2	2	0	2	18
2202	22	0	0	4	0	18
2021	23	1	2	0	0	22

6. [아이미래로]외에 당사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현황

아이미래로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 [아이미래로]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아이미래로]의 **2023 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은 다음 과 같습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320,095	55,722	569,991	189,997	90,650	7,494	
서울	9	280,758	44,801	567,340	180,424	90,650	7,494	
부산	0	_	_	_	_	_	_	_
대구	0	_	_	_	_	_	_	_
인천	1	_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0	_	_	_	_	_	_	_
대전	1	_	_	_	-	_	_	5곳 미만
울산	0	_	_	_	_	_	_	_
세종	0	_	_	_	_	_	_	_
경기	6	359,261	61,064	569,991	189,997	207,058	22,753	
강원	0	-	_	_	_	_	_	_
충북	0	_	_	_	_	_	_	_
충남	0	_	_	_	_	_	_	_
전북	0	-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0	_		_		_	-	_
경북	1	_		_			_	5곳 미만
경남	0	_	_	_	_	_	_	_
제주	0	_	_	_	_	_	_	_

- * "아이미래로"의 가맹점은 한 지역을 특정하여 운영권을 부여하는 지사 형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 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아이미래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이미래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말 기준	18개	2,08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아이미래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우, "지사"의 명칭으로 운영되나 그 실체에 있어 가맹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 천원, 부기	비고	
구군	수단	기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ПT
합계		2023년			0	
	소계	_			0	
광고	(비공개)	2023년			0	(비공개)
	소계	-	_	_	_	
판촉	_	-	_	_	_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가산디지털 종합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02-2026-6211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	----	----

계좌번호를 은행으로부터 부여 받는 경우	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 ② 가맹본부가 가맹금예 치신청서 은행에 팩스로 발송 → ③ 은행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좌번호 를 휴대폰으로 안내 → ④ 전송 받은 계좌번호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뱅 킹을 통해 가맹금예치	
매장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 ④ 가상계좌에 가맹금 예치	
인터넷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e-비즈니스사업단)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상계좌교부 ④ 인터넷뱅킹 접속 → ⑤ 가상계좌에 가맹금 이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원하여 당사가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위의 가맹금 예치와 관련한 내용은 귀하에게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이미래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냉난방기 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66 제곱미터 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예치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추정금액

1) 가맹비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가 맹 비	가입비 영업 노하우 교육 등	5,500 ~ 44,0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는 소멸성
	영업지역 제공	44,000		반환	, 10 da .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영업에 필요한 최소 배후인구를 포함하는 영업지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지역의 범위에 따라 가맹금을 차등적으로 획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귀하가 당사와 협의 후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귀하(가맹금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교육비는 없습니다.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금액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5,500 ~ 44,000		
합 계	5,500 ~ 44,000 (부가세포함)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아이미래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 9.9㎡(3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 가사유	비고
#인테리어 (점포내장 공사)	협력업체 미지정	협의	/		/	/	필요한 경우에만 점주 자율 착수
간판	협력업체 미지정	2,200	/	- 계약 시 100%	주문 전 계약 취소	주문 후	/
기타 집기/소품	협력업체 미지정	902	/	- 개점 이전까지 구매	/	/	개별구매
기타 초도물품	협력업체 미지정	242	/	- 계약 시 100%			
합계	_	3,344	_				

- # 인테리어는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고 매장 기준이 3평에 불과하고 필요에 따라 점주 자율로 맡기고 있어 공사비용을 산출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점포의 여건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따른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별도로 부담시 키는 비용은 없습니다.
- ▶ 간판공사는 인허가 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예치금의 50%

6)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아이미래로]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사업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고,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채용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5~60 세의 초대졸 이상 여성
종업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가능한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35~50 세의 여성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10 만원~50 만원 차등 적용	익월 5 일까지	반환불가	경영지도 에 대한 대가	/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영업 개시 이후의 기본교육은 무료	/	/	/	/
판촉분담비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미실시	판촉활동 실시	/
광고분담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측 50% 분담될 수 있음	통지 후 2주 이내	광고 활동 미실시	광고활동 실시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W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가능/귀책 사유를 고려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WI-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
지연이자	당사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 하 는 날까지	-	-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 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강제 또는 권장하는 필수 품목이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7조의 계약갱신 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5조의 1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 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 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 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 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1) 잔여계약기간의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부가세 포함

2) 신규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5,500 ~ 44,000	부가세 포함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가맹계약서 제35조)

-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아이미래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간판, 휘장, 로고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귀하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귀하의 물품으로 부터 위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2) 위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당사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귀하는 가맹점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각종 운영매뉴얼, 규정집, 문서, 도면, 도서 등)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 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아이미래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 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 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가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품목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이미래로]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아이미래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대 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아이미래로]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1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2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3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4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1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2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3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4주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4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1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1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2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2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3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3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3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4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4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미임점서비스) 1주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2주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3주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4주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4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1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1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1주 6일	당사의 가맹사 업의 동일성과 명성의 유지를 위하여 왼쪽에 기재된 품목만 고객에게 판매 할 수 있습니 다.	1회 위반 시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 2회 위반 시 -1주일 전 서 면 통보 급 중단 및 시정요구 3회 위반 시 -계약 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 구 개발을 통하여 신 상품을 출시하게 되므 로 본 정보공개서에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 지합니다.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2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3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3주 6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4주 5일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4주 6일
/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아이미래로] 시스템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을	1회 위반시 - 서면 통보 후 시정 요구 2회 위반시
다른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 매할 수 없습니다.	- 1 주일 전 서면 통보 후 물 품 공급 중단과 시정 요구 3 회 이상 위반시 -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명	권장가격 (단위:원/부가세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1주	575,000원	월별 서면통지	2020년 05월 기준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2주	1,12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3주	1,675,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이직서비스) 4주	2,24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1주	62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2주	1,20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3주	1,78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베스트서비스) 4주	2,36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1주 5일	88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1주 6일	1,02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2주 5일	1,72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2주 6일	2,00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3주 5일	2,56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3주 6일	2,98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4주 5일	3,40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베스트) 4주 6일	3,96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1주	675,000원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2주	1,29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3주	1,905,000원
산후도우미 알선(프리미엄서비스) 4주	2,50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1주 5일	99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1주 6일	1,14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2주 5일	1,87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2주 6일	2,17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3주 5일	2,75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3주 6일	3,20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4주 5일	3,630,000원
산후도우미 알선(입주형 프리미엄) 4주 6일	4,230,000원
/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아이미래로]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산모 관련 서비스업	아이미래로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해당 점포로부터 배후인구 300,000명 지역 등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해당 상권지역에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정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 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 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 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 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아이미래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8.2%	1.8%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아이미래로]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입니다. 다만, 갱신 시에는 1년 씩 계약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	
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	
였습니까?	D-180 ~ D-90
예→B, 아니오→®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D-60 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	
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	
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2항 각호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계약의 갱신 당시에 물품공급 중단사유 어느 하나에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	제 28 조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 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제 3 조 2 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 4 조 3 항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 거나 양도한 경우	제 4 조 4 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 27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 17 조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8 조 1,2 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 19 조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 21 조 1 항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제한 미준수 및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 22 조 2 항 ~3 항	28 조 각호 및 34 조 1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22 조 4 항	, _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 맹점 판매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제 28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 24 조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 29 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11 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제 31 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 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 32 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제 33 조 2 항~4 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 33 조 2 항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38 조 1 항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 28 조	19 호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 34 조 1	항 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 34 조 4 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 제 1항 본분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경우 종전 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14조 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 을 누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WOLT 18 1T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제 34 조 3 항 각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 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 34 조 2 항 각호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90일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본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새로운 계약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 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 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 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 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 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 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 없이 자신(직계가족을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아이미래로가 판매하는 품목 및 영업방식 등 영업형태가 동일한 산모 관련 서비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완료	문의: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이미래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 없음	주 6일 이상, 월 26일 이상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당사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을"은 통지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7 🛭	과그성경	부담비율		브다저키	шП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비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 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라 디오, 5대 일간 지 등)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 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전체 가맹점 사 업자의 70%이상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팜플렛 등 제작	없음	판촉물 제작비용 10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2015 년 자료 없음)	상동	상동	

2)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 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위한 팸플릿,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을 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유통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의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으로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아이미래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금으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 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당사와 귀하 모두 가맹계약 도중 어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 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계약으로 인하여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데 지급기일을 넘기는 경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설 매장의 경우는 약 3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48	
상담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전화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7~46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등	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지정된 예치 금융기관 지점에 가맹금 (계약금) 예치	D-30	정보공개서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9~27(3일)	15~16 쪽 소요비용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D-26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D-25~6(20일)	
교육	- 기본 교육	D-7 일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D-6~3(3일)	
영업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 등 가맹점 사업자 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의한 해결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 트렌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	판촉 및 신규고객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점	문의 : 당사

자 요청 시	창출, 소비자 트렌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부담(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아이미래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Ŧ	¹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가맹점 운영	5 시간 X5 일 = 25 시간	별도의 교육비 항목은 없음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3 시간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4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03,290	직영점 포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개설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지원 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사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준비중)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 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3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가맹금에치신청서]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형	방을 읽고 작성하시기	기 바랍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j	처리기간	<u>'</u>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반	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반	<u> </u>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공정화에 관한 와 같이 예치가명			_	은 법 .	시행령	제 5 3	돈의 7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지점징	: -					귀하		
•	,							
		예치기관이 주의	해야 할 사형	<u>}</u>				
1. 예치기관의 내주어야 합니	장은 예치가맹금 다.	을 예치한 경우	우에는 지체	없이 예계	히신청연	인에게	예치증	§서 <i>를</i>
	장은 예치가맹금.			예치가맹-	금 예;	치증서	를 첨느	부하여

-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가맹본부	영업표지			
회사명	(브랜드)			
제공확인	작성 예시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세이막다	(작성 란)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가맹희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위의 표의 빈칸 모두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위반 사실
 - 4) 가맹사업자의 부담
 -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 가맹점 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근 가맹점 현황표 제공 확인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현황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 가맹점 현황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 [] 대표	(인)
가맨히만자 : 성명	,	d명 또는 (이)